

안양시장애펈체육회 공고 제2024 - 6호

안양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재공고

안양시 장애인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근무 할 유능하고 참신한 장애인체육 인재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안양시장애펈체육회장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무기계약직)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상담 및 지도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기타 장애인체육 관련 현장지도 업무, 행정업무 등

II 근로조건

급여기준	근무일	시간	장소
급여: 월 2,185,200원(급여, 법정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수당: 활동비, 명절휴가비(연2회),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퇴직금 지급(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외)	주5일 (월~금)	09:00 ~ 18:00	사무국 등 현장

구 분	주 요 내 용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p> <p>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제12조(채용결격사유) ></p> <p>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iv>

IV 채용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시	비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24. 5. 20.(월)~6.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처 : 안양시장재인체육회 사무국 (안양종합운동장 1층)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4. 6. 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면접심사	24. 6. 18.(화)	· 지도자로서의 적성 · 인격 및 소양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4. 6. 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득점자 합격 · 신원조회
채용일자	24. 7. 1.(월)	· 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V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응시 (접수)자	1. 이력서(양식참고)	최종 합격자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외의 자격증 사본
	2. 지원서(양식참고)		2.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3. 자기소개서(양식참고)		3.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4. 연간 지도계획서(양식참고)		4. 주민등록 초·등본
	5.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취득 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		5.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징계사실유무확인서
	6. 가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내려 받아 작성(작성란 외 내용수정금지), 위 양식과 상이할 시 미제출로 간주 · 제출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VI

가점대상

-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특수)교육과 • 체육교육과), 특수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
- 국제대회 입상자 및 장애인 국가대표 출신
- 청년층(만 34세 이하)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노숙인)

VII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접수한 제출서류는 채용 종료일로부터 14일 내 채용담당자(031-388-3484)에게 요청 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최종 합격 및 근로 계약 이후라도 채용포기,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채용비리, 허위지원 등 결격사유 발생(6개월 내)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6개월 이후 발생할 경우 재공고를 시행 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장래인체육회(☎031-388-3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